제209회 제1차 정례회 광 진 구 의 회

서울특별시 광진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7. 6. 14.

기획행정위원회전 문 위 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제1351호

2017.6.14. 기획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2017.05.11

나. 회부일자: 2017.05.19

다. 상정일자: 2017.05.25

2. 제안설명

가. 제안설명자: 고재식 행정국장

나. 제정이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학교폭력예방과 대책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선도를 통하여 건강한 학교분위기 조성과 교육환경 조성으로 학생을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조례 운영 목적 및 용어의 정의 규정 (안 제1조, 제2조)
- 학교폭력 예방 대책에 관한 구청장 및 구민의 책무 규정(안 제4조, 제5조)
- -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지원 등에 관해 규정(안 제6조,제7조)
-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기능 규정(안 제8조~제11조)
- 학교폭력예방 증진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근거 규정(안 제13조) 라. 참고사항
- 관계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초·중등 교육법」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 입법예고 : 2017.3.17. ~ 4.6.(결과 : 의견 없음)

3. 검토의견 (전문위원 정수용)

- 본 제정조례(안)은 2017년 5월 11일 광진구청장이 제출하여 2017년 5월 19일 기획행정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임.
- 본 조례(안)은 최근 증가하는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하여「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한 학교 분위기를 조성하고 학교폭력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서,

○ 주요 제정내용은

- 안 제4조에서 구청장의 책무로써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장과 협의하고,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장려하며, 이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 안 제6조에서는 필요할 경우 교육장과 협의하여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교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안 제7조에서는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학교폭력 전문인력, 배움터지킴이 등 배치, 경비의 지원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음.
- 안 제8조에서는 지역의 학교폭력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광진구 학교폭력예방지원협의회"의 구성 및 회의운영에 대하여 규정 하였고,
- 안 제12조와 제13조에서는 학교폭력에 대한 실태조사, 학교폭력 예방에 기여한 관련기관·단체 또는 상담요원, 자원봉사자, 교사 등에 대한 표창의 근거를 마련하였음.

○ 종합 검토의견

- 최근 학교폭력문제가 사회적으로 많이 논의되면서 단순히 학교 차원에 서의 문제가 아닌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어 지금까지 학교에 대한 사항은 교육지원청 소관으로 여겨졌으나 이번에 조례가 제정되면 학교폭력에 대해 구에서도 인식을 같이하고 이에 따른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며.

- 또한 조례 제정 취지를 살리고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관련기관 및 단체, 담당부서 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실효성 있는 시책을 적극 발굴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회의록 참조

5. 토론

○ 회의록 참조

6. 심사결과

○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